정 관

제정 1994년 09월 22일

개정 1999년 01월 27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1999년 04월 27일 정관 일부변경(발행주식의 증자)
2000년 03월 16일 정관 일부변경(본점이전)
2002년 09월 06일 정관 일부변경(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 의거 이기)
2002년 10월 10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삭제 및 추가)
2002년 10월 11일 정관 일부변경(발행주식의 증자)
2002년 12월 27일 정관 일부변경(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2002년 12월 28일 정관 일부변경(발행주식의 증자)
2004년 10월 04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06년 04월 18일 정관 일부변경(본점이전)
2006년 07월 05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06년 10월 31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06년 11월 02일 정관 제1장 3조에 의거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2006년 11월 02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07년 01월 15일 정관 제1장 3조에 의거 지점이전 및 설치등기
2007년 03월 20일 정관 제1장 3조에 의거 지배인 변경 및 선임등기
2007년 10월 16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07년 11월 29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정관 일부변경(제4장 22조에 의거 임원변경)
2008년 01월 04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정관 제1장 3조에 의거 지점폐지등기
2008년 02월 01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2008년 02월 25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08년 06월 16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08년 08월 07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10년 05월 20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11년 07월 13일 정관 일부변경(주식의 양도제한 신설)
2011년 10월 31일 정관 일부변경(본점 도로명 주소로 변경)
2012년 03월 12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12년 08월 16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13년 05월 21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추가)
2014년 06월 10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삭제 및 추가)

2014년 07월 13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변경)
2014년 12월 19일 정관 일부변경(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2014년 12월 24일 정관 일부변경(발행주식의 증자)
2015년 09월 23일 정관 일부변경(본점 도로명주소 변경)
2016년 02월 04일 정관 일부변경(사업목적 삭제 및 추가)
2016년 10월 07일 정관 일부변경(개정상법에 따른 전면 개정)
2019년 08월 23일 정관 일부변경(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추가, 명의개서대리인추가)
2019년 11월 20일 정관 일부변경(주식의 양도제한 삭제)



주식회사 케이에스아이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에스아이 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물 공사업
1. 창호 공사업
1. 토목 공사업
1.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1. 기계설비(산업플랜트) 공사업
1. 건설업
1. 기계제조 및 설치업
1. 휀스제조 및 판매 시공업
1. 콘테이터 제조 및 판매업
1. 엔지니어링 용역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써비스업
1. 토공 공사업
1.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1. 광고물(간판) 제조 및 설치업
1. 철근가공 설치업
1. 난간(교량,도로) 공사업
1. 플라스틱 제조업(차선규제봉, 차선분리대)
1. 부동산 임대업
1. 목재 가공 설치업
1. 납골안치단 석재 금속 제조 설치업
1. 석재 가공 설치업
1. 가로등주, 철주 설치 제조업
1. 소음방지 제조 설치업

1.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1. 환경식생블럭 제조 설치업
1. 비철금속 제조 설치업
1.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1.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 용역업
1. 조형물 제조 설치업
1. 일반철물 제조업(가로재떨이, 쓰레기통, 스틸그레이팅, 덱크플레이트업)
1.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교통신호등, 교통신호 제어기)
1.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전광판)
1. 간판 및 광고업 제조업{안내판(옥외용, 옥내용), 간판, 전시대}
1.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분전반, 배전반, 전동기반, 제어반)
1. 선철주물 주조업{교좌장치(슈), 난간주, 울타리, 철개맨홀뚜껑, 주조제 가로등주}
1.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컨테이너, 버스승강장, 자전거거치대, 조립식구조물, 이동식초소)
1. 천막 및 기타 캔버스제품 제조업
1. 금속가구 제조업(칸막이, 캐비닛, 책상, 탁자)
1. 산업용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호이스트, 지브크레인, 천정크레인, 갠트리크레인)
1.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농구대, 심판대, 네트용지주, 골대)
1.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진열대, 작업대)
1.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휘장, 표시물, 도로표지병)
1.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1.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운동시설물, 조합놀이대, 조경시설물, 시소, 그네)
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도금, 도장, 피복 철강재 제조)
1.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자동차부분품, 기계장비부분품, 관련제품)
1. 금속표지판 제조업(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표시판, 교통안전표시판)
1. 농업용기계 제조업(수문권양기, 수문문비, 수문문틀, 가동보)
1.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컨테이너)
1.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알루미늄창틀, 창, 철문)
1.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난간, 가드레일, 금속울타리, 낙석방지책, YL형울타리, 면도날, 철조망, 볼라드)
1. 금속 조립구조제 제조업{가로등주(스텐, 철재), 방음판 및 방음벽}
1. 부동산 중개업
1.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1. 도금업
1.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1.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1. 전기공사업
1.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1. 신재생에너지사업
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제조업
1.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 가로등기구 제조업(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1. 방문 판매업
1. 철강재 임가공 및 판매업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 3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전라북도 남원시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공장 및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사원수 3인 미만인 경우 이사의 결정 또는 주주총회로 한다.

제 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 방법은 전주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전북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11,000주의 발행하기로 한다.

제 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 보통주식으로서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보통주 8종과 주주총회

의 결의에 따라 우선주로 발행 한다.

제 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단, 전자등록 할 경우 제 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생 주식의 수는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의 1/4 이하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이상 1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쥬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6.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정한다.

④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격과 납입기일

3.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격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신주의 인수방법

5.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제 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자기주식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 규정에 따른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 ③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의 금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금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13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14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① 회사가 제 11조 제 ④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주식취득의 조건은 이사회 결의시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본 회사의 주식은 제외, 이하 “금전등” 이라 함)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4.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5. 20일이상 60일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처할 수 있는 기간(이하 “양도신청기간“이라 함)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의 주식 취득의 조건

②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제 ①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3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려야 한다.

④ 주주가 제 ③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 ①항 제 2호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 ③항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로 정하며 끝수는 버린다.

제15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처분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16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7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감소 규정에 따라 소각한다. 다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19조(명의개서)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처리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 취급규칙에

따른다.

③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24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 ①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2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최종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경우에 따라 30일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관 제 1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최종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

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0일이 초과하는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정관 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9조 (소집 시기)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3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3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한 주식의 종류에 따른 의결권 수에 따른다.

제3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

제3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제39조 (이사의 원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이상의 수로서 한다.

제4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① 상법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상법 399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2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44조 (대표이사의 직무 및 권리대행)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이사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법인사업 안정관리 규칙, 유족보상금, 복리후생 규정)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걸친 정관 별지 1호의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한다.

② 이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2호의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3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당 법인의 영속적 법인 사업안정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4호의 법인사업 안정관리 규칙에 의하여 당 법인의 핵심 주주임원에 대하여는 보장성보험, 경영인 배상보험, 기타 필요한 보험에 부보 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유고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5호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처우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6호의 임원 복리후생 규정에 의한다.

제46조 (이사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 위로금, 복리후생 규정 적용시기) ① 제45조 각항 규정은 동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45조 각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선임되어 본 규정 시행일 이후 재직하는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③ 제45조 각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본 규정 시행이전 해당 임원이 입사한 때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④ 제45조 각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근속기간별 지급배수는 이 규정 시행 전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시행 전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행전 규정과 본 개정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개정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8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 및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 안건에 관한 사항
9.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2. 이사의 경업허용
13. 주식의 양도승인
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5. 기타 합작투자 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7. 기타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1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52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회사는 감사 1인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3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6조 (감사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법인사업 안정관리 규칙, 유족보상금, 복리후생 규정)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걸친 정관 별지 1호의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2호의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3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당 법인의 영속적 법인사업안정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4호의 법인사업 안정관리 규칙에 의하여 당 법인의 핵심 주주임원에 대하여는 보장성보험, 경영인 배상보험, 기타 필요한 보험에 부보 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유고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5호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처우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 6호의 임원 복리후생 규정에 의한다.

제57조 (감사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 위로금, 복리후생 규정 적용시기) ① 제56조 각항 규정은 동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56조 각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선임되어 본 규정 시행일 이후 재직하는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③ 제56조 각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본 규정 시행이전 해당 임원이 입사한 때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④ 제56조 각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근속기간별 지급배수는 이 규정 시행 전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시행 전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행전 규정과 본 개정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개정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7 장 계 산

제58조 (영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감사는 회일 1주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정기총회에 승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 제 ①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62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중간배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분기중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 년도 결산의 이익금으로 중간배당하고 중간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3조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화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본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조(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3조(정관의 사항)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4조(본 개정 정관의 시행시기) 본 개정정관은 정관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정관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9년 11월 20일

주식회사 케이에스아이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산업2길 19(용정동)

대표이사 채종술

사내이사 조만희

사내이사 조경하